



## 신고대상 건축물

- 신축 : 100㎡ 이하
- 증축·재축·개축 : 85㎡ 이하
- 대수선 :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거나 200㎡미만이고 3층미만
- 건축물 높이를 3M 범위안에서 증축
- 관리·농림·자연환경보전지역 : 200㎡미만이고 3층미만의 건축물
- 공업·지구단위계획구역·산업단지 : 2층 이하이고 500㎡ 이하인 공장
- 읍면지역 : 200㎡ 이하인 창고, 400㎡ 이하인 축사나 작물재배사
-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
